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이벤트 실시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완화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를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내지 제3항, 안 제7조)
- 나. 홈페이지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행사시 참여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 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일리지의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함(안 제14조의3)

3. 개정근거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08. 3. 13 ~ 4. 3(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8. 5. 8)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거나 채택된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③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구(동주민센터 포함) 또는 구가 설립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연 등의 관람권 구입
- 3. 마포쇼핑몰을 통한 물품구입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용자 참여행사 (제14조의2 제3항관련)

사업구분	대상사업	추진방법	범 위	행 사 수	경품범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사업 홍보	- 관내 창업인의 의욕 고취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항	아이디어 공모또는 이벤트	- 대상 : 마포구 홈페이지 회원 - 선정방식 : 심사 또는 무작위 추첨	대 상 사업별 년 2회 이 내	- 적용범위 : 각 대상사업별 - 연인원 : 50명 이내 - 지급액 : 연 2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현금, 물품, 상품권 등
	-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과 관련된 사항				
	-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내 공원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 자가통신망 구축, 모바일사업 등 U-마포 건설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마포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항				
'교육여건 개선 및 진학률 향상' 사업 홍보	- 관내 우수한 학교 유치와 관련된 사항				
	- 관내 학교의 진학률 향상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마포의 교육여건 개선과 마포사랑 실천에 관련된 사항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조성' 사업 홍보	- 문화관광벨트 및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명소 개발·조성에 관련된 사항				
	-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전략개발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마포의 문화관광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다 함께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사업' 홍보	- 마포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 구민 건강증진 확대와 공공 보건의료 기능강화에 관련된 사항				
	-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마포의 복지구현과 관련된 사항				
'환경보전 및 삶의 질 개선' 사업 홍보	- 자연환경 보존과 녹지공간의 확충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동문고 운영 활성화와 금연 클리닉과 관련된 사항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련된 사항				
	- 마포통계조사 및 통계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사항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 기타 마포구의 환경보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투명하고 능률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	-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련된 사항				
	-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 기타 투명하고 능률적인 자치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항				

사업구분	대상사업	추진방법	범 위	행 사 수	경품범위
각종 축제개최 홍보, 기념	- 세계 IT KOREA 박람회 관련사항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 대상 : 마포구 홈페이지 회원	대 상 사업별 년 2회 이 내	- 적용범위 : 각 대상사업별 - 연인원 : 50명이내 - 지급액 : 연 2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현금, 물품, 상품 권 등
	- 마포 웨딩타운 결혼 박람회 관련사항				
	-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운영 관련사항				
	- 관내 학생 등의 영어캠프 관련사항				
	- FC서울 플래그 페스티벌 관련사항				
	-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관련사항				
	- 흥대 거리미술전 관련사항				
	- 안디밴드 페스티벌 관련사항				
- 북 페스티벌 관련사항					
각종 축제개최 홍보, 기념	- 구민의 날 기념 관련사항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 대상 : 마포구 홈페이지 회원	대 상 사업별 년 2회 이 내	- 적용범위 : 각 대상사업별 - 연인원 : 50명이내 - 지급액 : 연 2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현금, 물품, 상품 권 등
	- 장애인 채용박람회 관련사항				
	- 마포생활체육 각 분야별 관련사항				
	- 구민제안제도 활성화 관련사항				
	- 마포 IP-TV 홍보 관련사항				
	- 기타 지역문화행사 관련사항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 인터넷방송 '사이버 학습관' 관련사항	아이디어 제 공 또 는 설 문 참 여 자	- 대상 : 마포구 홈페이지 회원 중 정책제공 또는 설문참여자	년4회 이내	- 인 원 : 연 200명이내 - 금 액 : 1인당 5,000원 상당의 상품 권 등
	- 동호회 사이트 관련사항				
	- 정책제공 회원 이벤트				
인터넷시스 템 개설기념	-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와 관련된 사항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 대상 : 마포구 홈페이지 회원	대 상 사업별 년 2회 이 내	- 적용범위 : 각 대상사업별 - 연 인 원 : 50명이내 - 지 급 액 : 연 2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현금, 물품, 상품 권 등
	- UCC 경진대회	이벤트	- 선정방식 : 심사 또는 무작위 추정	대 상 사업별 년 2회 이 내	- 적용범위 : 각 대상사업별 - 연 인 원 : 50명이내 - 지 급 액 : 연 2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현금, 물품, 상품 권 등
	- 구, 동 홈페이지 오류찾기 행사				
	- 마포 바로알기(문화유산 등) 행사				
- 기타 인터넷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와 관련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p> <p>②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7조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1~10. (생략)</p> <p>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내용중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즉시 삭제한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구본청 각국별 주무과장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삭제여부 결정</p> <p>2.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방안</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1.~10.(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3. 기타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③제6조2항 규정에 의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부서의 장의 심의 요청일부터 2일 이내에 당해자료의 삭제·보류·존속여부 등의 내용으로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p> <p>④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사 방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⑥기타 위원회의 회의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⑦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기획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한다.</p>	<p><삭 제></p> <p>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이하 "행사"라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의3(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생략)</p> <p>1.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의2(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p> <p>① ----- ----- ----- ----- -----</p> <p>1.~4.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거나 채택된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u></p> <p>③ <u>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u></p> <p>제14조의3(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구(동주민센터 포함) 또는 구가 설립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연 등의 관람권 구입</u></p> <p>3. <u>마포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